

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달라진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시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대상을 확대하고 일선 소방지휘관(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한 보직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보직관리 원칙 중 단서조항 문구 조정(안 제19조의 2)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의 문구를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함

나.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대상 확대(안 별표 6)

- 재난현장에서 드론활용의 필요성 증대, 화약류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실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협조 요청 사항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월중)

3) 행정규제 : 해당 사항없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을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을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6에 자격증(면허증)의 5퍼센트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자격증(면허증)의 3퍼센트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자격증(면허증)의 1퍼센트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종자
-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별표 6 비고 제1호 기호(-) 중 “**에너지 · 기상**”을 “**에너지 · 기상, 채광(기술 · 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u>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 ----- ----- ----- <u>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u> -----.
② 임용권자는 <u>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u>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② ----- <u>소속</u> ----- ----- ----- -----.
③ (생략)	<u>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술사·기 능장 2. 1급 ~ 4급 향해사· 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 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 기평가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향해사 · 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 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 도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 수산업기사, 잠수기 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 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 종자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을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을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